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90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재판경과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9047 판결

광주고등법원 1999. 9. 10 선고 98나865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김A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최BA)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학교법인 CA학원(소송대리인 변호사 서BB)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9. 9. 10. 선고 98나865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즉,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북도교육위원회는 1979. 9. 27. 피고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 및 처분허가 처분을 하면서 그 재산처분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1979. 12. 31.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취지의 부관을 붙인 사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게 되자 1982. 3. 4. 무렵 ○○북도교육위원회에 이를 수익용 재산으로 환원하여 관리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북도교육위원회는 같은 달 23.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임대허가신청을 하여 이를 관리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북도교육위원회가 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위 1979. 9. 27.자 허가처분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허가처분에 정하여진 대로 처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1982. 3. 23. 무렵에 이르러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학교법인이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감독청으로부터 그 기본재산의 매도 등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재산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소정의 보통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이사장인 소외 이DA가 피고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원고들과 그 판시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택한 증거는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3의 각 기재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EA의 증언과 제1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제1심 감정인 김FA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인 바,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EA의 증언의 내용은, 원심 판시와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피고가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회계장부의 수입계정란에 운영자금 가수금으로 기재하고 법인차입금상환이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원고들은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아 지금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사회결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갑 제9호증의 1은 그 발신명의란에 ‘학교법인 GA학원(당시 피고의 명칭) 이사장’, 경유·수신·참조란에 ‘내부결재’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원심 판시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기안문서인데, 기록에 의하면 그 작성경위나 작성목적은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이로써 이사회결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없으며,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3의 각 기재와 제1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제1심 감정인 김FA의 측량감정결과는 내용상 입증취지와 직접 관련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이사회결의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